1. 개정이유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 제주광역 VTS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안 제8조, 제9조)
- 나. 인천 영흥수도 관제구역 통신 채널 오기(14번→68번) 수정(안 별표 1)
- 다.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 반영 및 기존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삭제(안 별표1, 별표3)
- 라. 관제구역 진입·이동·출항 등, 해상교량·송전선로를 통과 예정인 선박이 각 구역별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 이상인 경우, 관할 VTS센터에 신고 (안 별표2,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24.3.21~4.1)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한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사안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2. <u>「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u>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 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 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 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 서의 항로지정제도	2. <u>「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u>
3. <u>「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u>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3. <u>「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u>

[별표1]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 [별표1]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 토시이 게의

통신의 제원							통신의	제원
제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통신용 채널		관제			통관제구역
서	구역명	경위도 좌표(WGS-84)	(호출명칭)		관서	구역명	경위!	도 좌표(W
천 상 통 제 턴	인천항 구역	○ 인천교통안전특정 해역 및 인근 해역 1.01.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 22.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11분00초 03. 북위 37도 13분 52.1초, 동경 126도 12분 26.2초, 64. 북위 37도 17분 41.3초, 동경 126도 05분 34.7초 05. 북위 37도 20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06. 북위 37도 21분 42초, 5경 126도 26분 24초 07.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 08.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 10. 북위 37도 15분 14.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10. 북위 37도 15분 14.5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11. 북위 37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22. 북위 37도 11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12. 북위 37도 11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13. 북위 37도 11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14.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14.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32분 24초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16.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24초 17.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20.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20.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20. 북위 37도 06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12초 21.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	14 (인천 브이티에스)		인해교관제터 인해교관센	인천항	02. 북위: 126도 1 03. 북위: 58 120 04. 북위: 58 120 05. 북위: 126도 2 07. 북위: 126도 2 10. 북위: 126도 2 10. 북위: 126도 2 11. 북위: 126도 2 11. 126도 1	해역 37도 05분 4분 1분

관제		관제통신용	
관서	구역명	경위도 좌표(WGS-84)	채널 (호출명칭)
인천형상통 재판제 인해 교관제	인천항 구역	○ 인천교통안전특정 해역 및 인근 해역 01.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 02.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11분00초 03. 북위 37도 17분 41.3초, 동경 126도 12분 26.2초 04. 북위 37도 17분 41.3초, 동경 126도 05분 34.7초 05. 북위 37도 20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06.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 07.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6분 24초 08.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09. 북위 37도 15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 북위 37도 14분 06초, 동경 126도 25분 48초 12.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13.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13.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13. 북위 37도 10분 18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15.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54초 14.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36초 17. 북위 37도 10분 36초, 동경 126도 12분 36초 18.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18. 북위 37도 06분 42초, 동경 126도 12분 30초 18. 북위 37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12초	14

다음 선 안의 해역(자월 도 부근)은 제외한다. 10. 북위 37도 10분 10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102. 북위 37도 118촌 10초, 동경 126도 15분 18초 103.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104.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105.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105.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23분 10초 106.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23분 03초 107. 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23분 10초 108. 북위 37도 10분 10초, 동경 126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11분 13조, 동경 126도 11분 13초, 동경 126도 18분 13초, 동경 126도 18분 13초, 동경 126도 25분 39초 107.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107. 북위 37도 11분 36초, 동경 126도 29분 56초 105. 북위 37도 15분 20초, 동경 126도 29분 54초 106.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6분 348, 523 126도 26분 54초 107.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6분 38, 95초 108.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54초 107.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6분 38, 95초 108.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6분 28분 38, 95초 108.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6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6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52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52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52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52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5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9. 북위 37도 17분 166초, 동경 126도 25분 42초 105. 동경 126도 25분 39초	다음 선 안의 해역(자월도 부 근)은 제외한다. 이.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0분 48초 02. 북위 37도 16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18초 03. 북위 37도 19분 36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04. 북위 37도 16분 48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05. 북위 37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24분 00초 06. 북위 37도 12분 18초, 동경 126도 22분 00초 07. 북위 37도 11분 12초, 동경 126도 22분 00초 08. 북위 37도 07분 27초, 동경 126도 19분 24초 09. 북위 37도 07분 27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10.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126도 18년 12초 10. 북위 37도 09분 19초, 동경
이 인천항 및 인근 해역 11.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 2.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 3.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 4. 북위 37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32분 58초 5. 북위 37도 30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44초 6.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5분 42.7초 7.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o 인천항 및 인근 해역 01. 북위 37도 17분 16초, 동경 126도 32분 03초 02. 북위 37도 16분 47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03. 북위 37도 15분 14.5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04. 북위 37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05. 북위 37도 11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06. 북위 37도 11분 59.49초, 동경 126도 30분 38.5초 07. 북위 37도 11분 57초, 동경 126도 26분 48초 07. 북위 37도 13분 57초, 동경 126도 29분 02초 08. 북위 37도 15분 20초, 동경 126도 29분 56초 09. 북위 37도 16분 23초, 동경 126도 29분 56초 10. 북위 37도 17분 15초, 동경 126도 29분 54초 11.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9분 54초 11. 북위 37도 17분 12초, 동경 126도 26분 38.95초

				l		
						12. 11 13. 11 14. 11 15. 11 16. E
제주항 해상 교통	제주항	이 제주항 및 인근 해역 01. 북위 33도 31분 18초, 동경 126도 32분 47초 02. 북위 33도 34분 46초, 동경 126도 46분 25초 03. 북위 33도 41분 26초, 동경 126도 40분 20초 04.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5초 05. 북위 33도 37분 41초, 동경 126도 20분 37초 06. 북위 33도 28분 53초, 동경 126도 18분 41초	12 (제주 브이티에스)	제주 광역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제주항 구역	
관제 센터		○ 서귀포항 강정지구 및 인근 해역 101. 북위 33도 13분 50초, 동경 126도 29분 03초 02.북위 33도 13분 23초, 동경 126도 39분 20초 03. 북위 33도 08분 23초, 동경 126도 39분 20초 04. 북위 33도 08분 23초, 동경 126도 24분 49초 05. 북위 33도 13분 23초, 동경 126도 24분 49초	12 (서귀포 브이티에스)			

		12. 북위 37도 18분 54초, 동경 126도 28분 48초 13. 북위 37도 21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24초 14. 북위 37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32분 58초 15. 북위 37도 30분 35초, 동경 126도 35분 44초 16.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5분 42.7초 17.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주 역 상	제주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통 반제 <u></u> 민터	구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

1.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1.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관제통신	관제통신 내용
시점 기. 이동	관제통신 내용 1) 선박명 2) 이동예정 시각 3) 출발자목적지 4)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가. 수면상 높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10분 전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나. 수면상 높이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다. 수면상 높이 62미터 이상인 선박이서해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별표2]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별표2]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ㆍ하선 관제통신 방법

관제통신						
전세공연 시점	관제통신 내용					
	1) ~3) 현행과 같음 4) 아래 구역의 교량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수면상 높이		
	구 역	교	량	신고기준(m)		
	군산광역	동박	대교	15		
	목포광역	목포	대교	45		
	평택.	서해	주경간	62		
	당진항	대교	주경간 이외	45		
		인찬	대교 대교	50		
	인천항	영흥	대교	18		
			대교	30		
	경인항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여수	이순	<u>_</u> 신대교	60		
	광양항	묘도대교		40		
	울산항	울산대교		55		
ll	부산항	부산항대교		60		
가. 이동	마산항	마창대교		60		
10분 전		거가	거제~저도 구간	32		
		대교	저도~ 중독도구간	47		
			<u> </u>	18		
	통영연안	연화도	~우도	20		
	5) 아래 구역의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구 역		선로명)	수면상 높이		
		`		신고기준(m)		
	인천항		공선부두 - 부두 구간	52		
		영흥도-선	제도 구간	24		
	울산항	매암부드	F_장생포 구간	40		
	통영 연안		노대도 구간	26		

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도선사가 승선할 때	1) 선박명 2)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3) 승선 시각장소 4) 목적지 5)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가. 수면상 높이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수면상 높이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다. 수면상 높이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예정일 경우			

E 11 1171	WW. 211.110					
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1) ~4) 현행과 같음 5) 아래 구역의 교량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신고기준 이상인 선박만 해당)					
	구 역		교 량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m)		
	군산광역		·백대교	15		
	목포광역	목	포대교	45		
	평택.	서해	주경간	62		
	당진항	대교	주경간 이외	45		
	인천항	인	천대교	50		
	인신영	영	흥대교	18		
		영	종대교	30		
	경인항	경인아라뱃길에 설치된 교량		15		
71	여수·	이순신대교		60		
가. 도선사가	광양항	묘도대교		40		
도선자기 승선할 때	울산항	울산대교		55		
002 -	부산항	부산항대교		60		
		마창대교		60		
		거가	거제~저도 구간	32		
	마산항	대교	제도~ 중독-간	47		
		가2	조연륙교	18		
			· 통과하려는 준 이상인 선빅	선박의 수면상 만 해당)		
	구 역		간(선로명)	수면상 높이 신고기준(m)		
	인천항	북항	관공선부두 - 5부두 구간	52		
		영흥도-선재도 구간		24		
	울산항 매암부두 장생포 구간 40					
《 비고 : "수면상 최고 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 또는 구						

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관제대상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 2. 관제대상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

[별표	[별표3] 관제구역 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					
구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 군산 광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안전에 필요 한 사항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목포 광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광역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주 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목적지 3) 통과위치 4) 입항예정 시각·장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30 분전 및 5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 당진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수면상 최고 높이(서해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당진 항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서해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62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별표3]** 관제구역 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

\exists	구분	ł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2	군산 광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동백대 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15 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라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동백대 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15 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il-	목포 광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목포대 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45미 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바	구역	진 <u>출</u>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목포대 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45미 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제주 광역	진입 신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역	진출 신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5 ·)	평 , 진 당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선박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기) 수면상 최고높이가 62 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경간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5 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경간 이외의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st :-)	o 항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서해대교를 통과하는 선박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 경간 항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5미터 이상인 선박이 주 경간 이외의 항로를 통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인천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수면상 최고 높이(인천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5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DWT 175,000톤 이상 300,000 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6)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LPG 또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 항 구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50 이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인천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8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52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북한 5부두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라) 수면상 최고높이가 24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북한 5부두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라) 수면상 최고높이가 24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도 선재도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가 한행소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항구역	진출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인천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5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인천대교 통과예정 시각(크루즈선 및 DWT 175,000톤 이상 300,000 톤 이하 유조선만 해당) 6) 북장자서 통과예정 시각(LPG 또는 LNG를 운반하는 선박만 해당)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인천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연흥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52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북한 5부두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라) 수면상 최고높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국한 5부두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라) 수면상 최고높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영흥도 선재도 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5)~7) 현행과 같음
경인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갑문 도착예정 시각 5)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경인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중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선박이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려는 경우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_							
	진 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높이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선박이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 , 광양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 수 , 양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이 묘도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o 항 구	진출 신고	가. 출항 30 분전 및 5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30 분전 및 5 분 전	1)~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니 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60 미터 이상인 선박이 이순신 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 미터 이상인 선박이 묘도대 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울 산 참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울 한 주 구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55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울산대교를 통과하려는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매암부두-장생포 호안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경우
항 구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55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울산대교를 통과하려는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40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매암부두-장생포 호안구간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경우

				IΓ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산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산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부산항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6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수면상 최고 높이(부산항 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 높이가 6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마산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마산 항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가 60 미터 이상인 선박이 마창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32 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거제~저도 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17대교 저도~중축도 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18 미터 이상인 선박이 가조연륙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당) 그밖에 필요한 사항
항 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6인 미의 이상인 선박이 마창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32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거제~저도 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 또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47미터 이상인 선박이 거가대교 저도~중축도 구간을 통과하려는 경우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선박이 가조연 목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되는 경우도 나이 가로면 생길으로 가장인 보이 가 되었다.
통영 연안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역 진입 시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목적지 4) 입항예정 시각·장소 (관제구역 내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통영 연안 구역	진입 신고	가. 관제구 역 진입 시	1)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20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 물이 연화도 - 우도보도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26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 물이 욕지도-하노대도 구간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 10 분 전	배전선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면상 최고 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20 미터 이상인 선박 또는 구조물이 연화도 - 우도보도교를 통과하려는 경우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26
신고	군 선	1 ' ' ' '	전교	군 선	0

※ 비고 : 입항 또는 출항의 시점은 「항만법」제2조 │ ※ 비고 제5호가목에 따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등(이하 등에서 출항하는 때를 말한다.

1. 입항 또는 출항의 시점은 「항만법」제2조제5호가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에 입항하거나, 계류시설 목에 따른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 등(이하 "계류시설 등"이라 한다)에 입항하거나, 계류시설 등에서 출항하 는 때를 말한다.

> 2."수면상 최고 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 또는 구 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